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30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1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2.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사해신탁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규정 신설

개정안은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를 회피하고자 「신탁법」상 사해신탁을 하는 경우 법원에 취소소송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지방세의 경우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가 ① 「민법」상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하는 재산 은닉·양도 등)를 한 경우 같은 법을 준용하여 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취소소송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해행위의 개념에 「신탁법」상 사해신탁(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 한 후 수탁자를 통하여 행하는 재산 은닉·양도 등)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현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채납자가 「민법」상 사해행위를 한 경우 동일하게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과 동일하게 사해행위에 사해신탁이 포함 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신탁법」상 사해신탁은 이미 사해행위의 일환 으로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해신탁이 발생 하는 경우 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이해를 쉽게 하는 차원에서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도 사해행위에 사해신탁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일 연기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091호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법률 제19233호 부칙 제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 조세

이외의 금전을 의미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현행법 제7조는 이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대금지급 정지 제도),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를 대체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개정안은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대체되는 기존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한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은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2024년 2월 개통되었음에도 독자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서울특별시의 자료나 아직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수입과목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처리할 수 없기 때문임.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0년 3월 24일 법률 개정 당시 동 시스템 구축을 2021년 완료하고 “2022년 2월 3일”부터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i)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시스템 구축 지연 등을 이유로 2021년 12월 28일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약 2년 연기한 후,

ii) 2023년 12월 29일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다시 “2025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였는데,

iii)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일을 또 다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면 최초 시행일 대비 최대 6년(2022년 2월 3일 → 2028년 1월 1일)까지 연기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개정안과 같이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법률 시행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일 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2026년 1월 1일”로 1년 정도 연기하고, 이후 추가 연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은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을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연기하고 있는데, 이를 2027년 1월 1일까지 2년만 연기하면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을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연기하고 있는데, 이를 2027년 1월 1일까지 2년만 연기하려는 것임.

부대의견

가. 서울특별시는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 2027년까지 완료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 조제5호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안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 조 중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안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

조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안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4. (생략)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 ----- ---. ----- ----- ----- ----- ----. 1. ~ 4. (개정안과 같음)

5. 제7조의6의 개정 규정: <u>2025년 1월 1일</u>	5. ----- ----- <u>2025년 1 월 1일 이후 3년 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날</u>	5. ----- ----- <u>2027년 1 월 1일</u>
제2조(대금지급 정지 에 대한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 은 <u>2024년 12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 진다.</u>	제2조(대금지급 정지 에 대한 유효기간) ----- - <u>2024년 12월 31 일 이후 3년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날</u> ---	제2조(대금지급 정지 에 대한 유효기간) ----- - <u>2026년 12월 31 일</u> ----- ---
제3조(납부증명서 제 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6의 개정규 정은 <u>2025년 1월 1 일 이후</u> 대금을 지 급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증명서 제 출에 관한 적용례) ----- - <u>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u> ---.	제3조(납부증명서 제 출에 관한 적용례) ----- - <u>2027년 1월 1일</u> ----- -----.
법률 제19233호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 률 제19863호 지방행 정 제재·부과금의 징	법률 제19233호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 률 제19863호 지방행 정 제재·부과금의 징	법률 제19233호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 률 제19863호 지방행 정 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률 제17091호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제7조 의6 본문의 개정규 정은 <u>2025년 1월 1</u> 일부터 시행한다.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 한다) 제1조(시행일) ----- ----- -----. ----- ----- ----- ----- ----- --- <u>2025년 1월 1</u> <u>일 이후 3년의 범</u> <u>위에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날</u>-----.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 한다) 제1조(시행일) ----- ----- -----. ----- ----- ----- ----- ----- --- <u>2027년 1월 1</u> <u>일</u>-----.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률행위”를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로,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u>법률행위</u> 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 ----- ----- ----- <u>법률</u> <u>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u> ----- 「민법」 <u>제406조·제407조</u> 및 「신탁 <u>법」 제8조</u> ----- -----.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 -----.

1. ~ 4. (생략) 5. 제7조의6의 개정규정: <u>2025년 1월 1일</u>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대금지급 정지에 대한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의6의 개정규정: <u>2027년 1월 1일</u>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대금지급 정지에 대한 유효기간) ----- <u>2026년 12월 31일</u>----- -.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
---	---

용례) 제7조의6의 개정규정은 <u>2025년 1월 1일</u> 이후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6 본문의 개정규정은 <u>2025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용례) ----- <u>2027년 1월 1일</u>----- -----.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 -----. ----- ----- ----- <u>2027년 1월 1일</u>-----.
---	---